제94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접지설비 · 구내통신설비 ·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전원선 기술기준 신설(신설) o 신축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(중계장치)를 건축주가 설치한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할 때 전원선은 난연재질(KS C IEC 60332시리즈*)이상을 사용하도록 함 * 화재조건에서 전원선의 난연성 시험조건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▶접지설비 · 구내통신설비 ·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8조	1.비중요
2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(신설) o ‘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·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 중에서 불법정보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범위 규정 o 불법정보 식별 · 제한 조치 운영 · 관리 실태 기록 보관 기간 및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(신설) o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규정 –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규정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2.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절차(신설) o 연계정보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(사업계획서, 심사기준 증명 서류, 법인 정관 등), 의견수렴 절차(자료제출 또는 의견청취), 심사기간(90일 이내) 등 규정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3.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(신설)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'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', '연계정보 생성·처리 절차의 적절성' 등 5가지 승인 심사 사항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	1.비중요 2.중요 3.중요 4.중요 5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(신설) o 연계정보 생성·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취해야할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할 안전조치의 내용을 구체화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2 5.보호조치 운영 · 관리 실태 점검 대상 등(신설) o 연계정보 규모,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실태점검 범위, 실태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3,제9조의14	
4	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에 관한 사항(신설) o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규정 - 시설원예 기술사, 축산 기술사 ▶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교육이수 의무 신설(신설) ㅇ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자(사업지행자)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,관리책임자는 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6조에 따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▶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2.관리대장 제출의무 신설(신설) ㅇ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현장에 갖추고 있는 이행상황 관리대장을 연1회(5월 31일까지)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▶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4	1.중요 2.비중요
6	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· 표시기준 개정안 (환경부)	1.제품의 중량 · 용량 · 개수 · 매수 · 크기 변경 사실 표시(신설) ㅇ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중량 · 용량 등이 감소하고 단위가격(출고가격 기준)이 상승하는 경우 중량 · 용량 등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▶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· 표시기준 제6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(교육부)	1.출제·검토위원의 자격 예외 사유(신설) ○ 대수학능력시험 출제・검토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과정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,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자 함 – 1. 해당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 자녀가 있는 사람 – 2. 최근 3년 이내 학원 등 사교육업체의 문제지 집필・검토・자문 등을 하거나, 영리목적의 학원, 인터넷 사이트, 방송 등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강의・특강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– 3. 직전 3년간 연속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직전 3회 연속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에 참여한 사람(다만, 평가원 재직자는 예외로 함) ※ 그 밖의 출제・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함 ▶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4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국가유산청)	1.중대산업재해발생시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강화)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사기관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, 발굴허가 제한, 등록제한 처분 신설 – ▵1차위반 : 경고 → 업무정지 6개월 ▵ 2차위반 : 업무정지 1년 → 1년6개월 ▵ 3차위반 : 업무정지 2년 → 등록취소 – 동 위반행위로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제한기간 2년 설정 – 동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또는 등록제한기간 동안 해당 조사기관이나 책임자가 포함된 경우 발굴허가 제한 ▶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, 제27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(소방청)	1.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방법 등(신설) ㅇ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·방법, 항목·등급 등을 규정 - (대상·방법) △지정수량 3천배 이상~ 5만배 미만 서면점검, 5만배 이상 현장점검 △각 평가는 면담, 기록검토, 현장확인으로 진행(제5조제3항) - (주체) △서면점검 : 관리인이 자체 서면점검 실시(제5조제3항제2호) △현장점검 : 평가반(소방공무원, 민간전문가) 구성하여 현장평가 실시 (제4조, 제5조제3항제1호) - (항목) 예방규정 제출 항목(13개)을 평가항목*으로 함 * 안전관리자·대리자, 자체소방대, 안전교육, 시설점검, 비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 - (등급)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점수 부여 후 4개 등급*으로 환산(제2조제1항제5호) * (1등급) 환산점수 90점 이상, (2등급) 환산점수 80점 이상~90점 미만, (3등급) 환산점수 70점 이상~80점 미만, (4등급) 환산점수 70점 미만 - (기타) △평가단위는 하나의 제조소로 하되, 제조소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평가(제5조제1항) △평가 시행 전 30일 전 통지(제3조제4항) ▶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체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0	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(환경부)	1.페트병 포장재 무게기준 신설(강화) ㅇ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 유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구조와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에 무게기준을 신설 – 먹는샘물 · 음료류 페트병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무게 기준을 신설하여, “재활용 최우수 등급”을 판정받기 위한 기준에 “경량화지수가 1.00 이하인 경우” 추가 ▶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3조	1.비중요
11	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(신설) ㅇ 식품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(출고가격 기준)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주위에 내용량 변경 사실을 3개월 이상 표시 ▶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	1.비중요